



# 가정통신문

서삼중-2023-59

## 제 목 : 출결 처리에 대한 안내

- 주소 :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87길 70
- 담당 : 070-8640-8443
- 홈페이지 <http://sahmyook.ms.kr>

안녕하십니까?

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며 무한한 감사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. 출결 처리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.

### ◎ 출석 인정 결석

1. 체험학습 (결재 완료된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이 된 경우)
  - 연간 누적일 20일 이내
  - 반일 운영 가능 : 참여하지 못한 수업시수가 4시간 미만일 경우 0.5일로 계산 (시간 기준은 60분이 아닌 수업시수 의미)
2. 경조사 (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, 공휴일,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.)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형제, 자매, 부, 모	1
입양	학생 본인	20
사망	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	5
	부모의 조부모(증조부모, 외증조부모)	3
	부모의 외조부모(진외증조부모, 외외증조부모)	
	형제, 자매 및 그의 배우자	
	부모의 형제, 자매 및 그의 배우자	1

3. 생리통 : 월 1일 결석 인정 (단, 지각, 조퇴, 결과 3회를 1일 결석과 동일하게 간주)
  4. 천재지변, 감염병, 숙려제, 병원학교 수업,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등
- ※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담임선생님을 통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### ◎ 미인정 결석

1. 「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」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
  2.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
- ※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담임선생님을 통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◎ 질병 결석

1.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 기록)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
2.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학부모의견서, 처방전, 담임교사 확인서 등)를 5일 이내에 제출
3. 기저질환, 만성질환의 경우 학기 중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

※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담임선생님을 통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◎ 기타 결석

1. 부모·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2.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3. 기타결석은 1일이라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특기사항을 입력한다.

※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담임선생님을 통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◎ 지각/조퇴/결과

1. 지각은 등교시각인 오전 09: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
2. 조퇴는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
3. 결과는 수업시간에 일부 또는 전부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.
4. 지각/조퇴/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, 미인정, 기타로 처리
5. 같은 날짜에 지각/조퇴/결과가 발생된 경우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.

<지각/조퇴/결과 처리 기준>

[기준1] ①미인정 ②질병 ③기타 순서

[기준2] ①조퇴 ②지각 ③결과 순서로 [기준1]을 우선 적용함.

※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담임선생님을 통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2023. 04. 28.

서울삼육중학교장(직인생략)